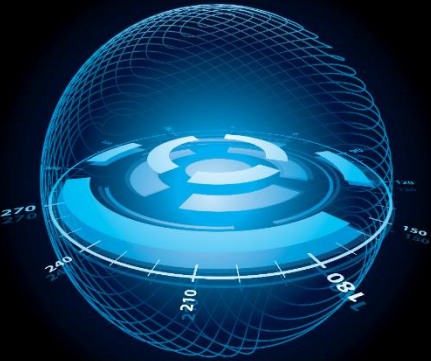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UKVFTA 협정에 따른 제 53/2021/ND-CP 호 시행령 및 제02/2021/TT-BTC호 시행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06월 14일



배경

- 베트남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 (이하“회원국”) 간에 체결된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 (“UKVFTA”) 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일시적 발효, 2021 년 5 월 1 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으며 베트남 정부는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 2021년 05월 21일부터 유효한 제53/2021/ND-CP호 시행령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될 수출입양허관세율표를 규정하며 “제53호 시행령” 관련 수행 및 적용 절차를 안내한다; 그리고
 - UKVFTA 원산지 규정을 안내하는 산업통상부(“MOIT”)의 2021년 06월 11일 제02/2021/TT-BCT호 시행 규칙(“제 2호 시행규칙”)은 2021년 07월 26일부터 효력을 가질 예정이다.
- 본 뉴스에서는 제53호 시행령 및 제2호 시행규칙의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요약하고, 기업들이 주의 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제53/2021/ND-CP호 시행령 & 제02/2021/TT-BCT호 시행규칙 주요내용

제53/2021/ND-CP호 시행령:

- 베트남 수출입 관세표
- UKVFTA에 따른 수출입 관세율 적용 조건
-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된일까지의 세관에 신고가 완료된 선적에 대한 관세 처리

MOIT 의 제02/2021/TT-BCT호 시행 규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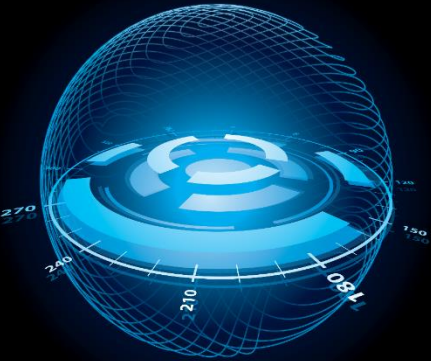
- "원산지 제품" 규정
-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 누적 및 불충분 공정

제53호 시행령 및 MOIT의 제2호 시행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UKVFTA 협정에 따른 제 53/2021/ND-CP 호 시행령 및 제02/2021/TT-BTC호 시행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06월 14일



제53/2021/ND-CP호 시행령

1. 베트남에서 영국 및 북 아일랜드로 수출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수출양허관세율표

i. 본 시행령은 수출양허관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 영국 및 북 아일랜드로 수출될 상품은 UKVFTA 협정에 따라 수출세율 0%가 적용된다;
- 제57/2020/ND-CP호 시행령 수출 관세율표에 속한 상품이지만, UKVFTA의 수출양허관세율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UKVFTA에 따라 수출 관세율 0%가 적용된다.

ii. UKVFTA 수출 관세율 적용 조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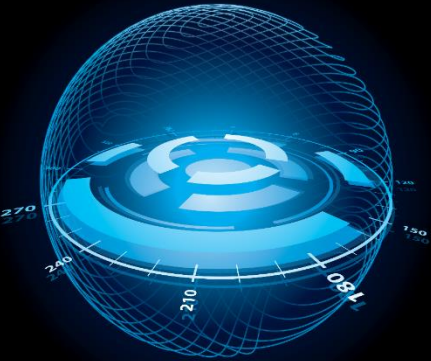
- 목적지가 영국 또는 북 아일랜드인 운송증명서류(사본); 그리고
- 베트남에서 출발한 위탁수출의 경우 영국 및 북 아일랜드로 수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수입세관신고서

비고 : 베트남에서 수출할 시점에 MFN 수출관세율이 적용된다. 수출 신고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UKVFTA 관세율이 적용되며, 상기 서류를 충분히 제공한 후에 수출자는 MFN 수출 관세율과 UKVFTA 수출 관세율의 차이에 대해 환급을 세관당국에 요청 할 수 있다.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UKVFTA 협정에 따른
제 53/2021/ND-CP 호
시행령 및 제02/2021/TT-
BTC호 시행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06월 14일



제53/2021/ND-CP호 시행령

2. 영국 및 북 아일랜드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수입양허관세율표

본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i. 관세할당량 적용 :

- 04.07; 17.01; 24.01; 25.01의 항목에 속한 상품들은 관세할당량 적용;
- 할당량 내 수입양허관세율 적용;
- 연간 할당량; 및
- 할당량 외 수입 관세율

ii. UKVFTA에 따른 수입양허관세율 적용 조건 :

- 수입양허관세율표에 속한 수입품은 본 시행령에 규정된다 ;
- 영국 및 북 아일랜드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거나 베트남의 비관세지역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출될 상품;
- UKVFTA에 따른 "원산지"의 규정을 충족하며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상품.

iii. 발효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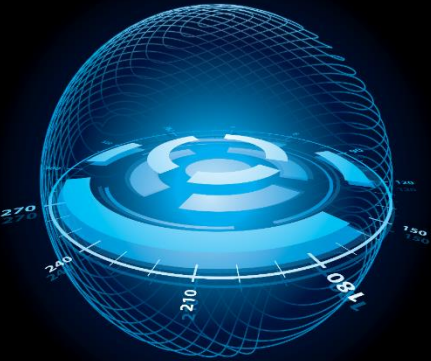
- 본 시행령은 **2021년 5월 21일부터** 발효되는데 .
-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및 북 아일랜드에서의 **베트남 세관에 신고된 수입품에** UKVFTA에 따른 양허관세율이 적용가능하다.

비고 : 2021년 1월 1일부터 제53/2021/ND-CP호 시행령 발효일까지 MFN 수입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며 등록된 수입 신고서의 경우 수입자 (UKVFTA의 특별우대 수출 관세율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MFN 및 UKVFTA세율의 차이에 대한 환급을 베트남 세관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UKVFTA 협정에 따른
제 53/2021/ND-CP 호
시행령 및 제02/2021/TT-
BTC호 시행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06월 14일



MOIT의 제02/2021/TT-BCT호 시행 규칙

1. "상품 원산지" 규칙

다음 물품은 당사국에서 "원산지"로 간주되므로 UKVFTA에 따른 관세 우대를 받을 자격이 있다.

i.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물품 - 예 :

- 한 국가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
- 땅속 또는 해저에서 개척한 광산물;
- 태어나고 자란 살아있는 동물;
- 해당 국가의 선박에서 잡은 수산물; 기타

또는

ii. 완전히 획득되지 않았지만 "비원산지재료"가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제품 (일반적으로 생산된 제품).

항목별로 적용되는 4가지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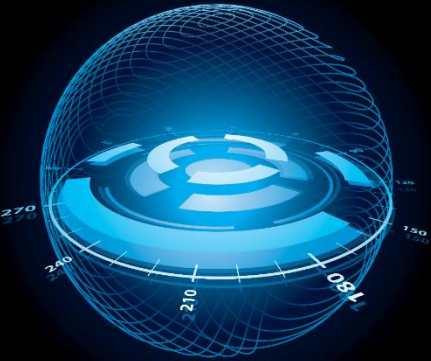
- 작업 또는 가공으로 허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최대함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 HS코드의 전환 원산지 기준 충족 : 투입재료 및 가공품, 제조품 그룹 (HS 4개의 숫자) 및 그룹 분류 (HS 6개의 숫자)에 대한 차이가 있다;
- 구체적인 작업 및 가공 수행;
- 작업 또는 가공은 완전하게 획득된 정해진재료로 수행된다.

비고 : 비원산지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 공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UKVFTA의 "누적기준" 및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규정됨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UKVFTA 협정에 따른 제 53/2021/ND-CP 호 시행령 및 제02/2021/TT-BTC호 시행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06월 14일



MOIT의 제02/2021/TT-BCT호 시행 규칙

2. 원산지 증명서

수입자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UKVFTA에 따른 양허관세율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원산지 증명 서류 중 하나를 수입국의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i. 수출국의 당국에서 발급한 **EUR.1 양식의 COO** ; 또는
- ii. 수출자가 발행 한 **원산지 자체 인증**은 인보이스, 화물 인수증 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기타 상업서류.

- **영국 및 북 아일랜드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 :**

- 6,000 EUR 를 초과하지 않는 화물의 경우 **모든 수출자가** 원산지 자체 인증이 가능하다.
- 6,000 EUR 를 초과하는 화물의 경우 "**승인된 수출자**" 만이 원산지 자체 인증이 가능하다.

-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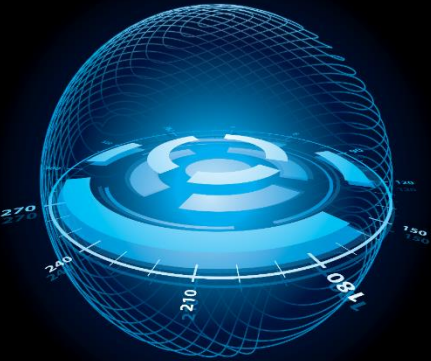
- 6,000 EUR 를 초과하지 않는 화물의 경우 **모든 수출자가** 원산지 자체 인증이 가능하다.
- 6,000 EUR 를 초과하는 화물의 경우 **EUR.1(*)의 양식 COO**는 원산지 증명서로 사용된다.

비고 (*) : UKVFTA에 따른 EUR.1양식의 Box 2 (당사자 이름 표시)는 EVFTA에 따른 EUR.1양식과 다름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UKVFTA 협정에 따른
제 53/2021/ND-CP 호
시행령 및 제02/2021/TT-
BTC호 시행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06월 14일



MOIT의 제02/2021/TT-BCT호 시행규칙

3. 원산지 누적기준 및 단순한 가공 및 제조

다음을 포함하여 UKVFTA의 다른 회원국 및 / 또는 UKVFTA의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생성 된 재료를 통합하여 해당 제품을 획득 한 경우, 그 제품은 수출 당사국의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 i. **유럽연합 (EU):** 수출 회원국의 완제품은 EU 원산지인 원자재가 포함되며, 해당 수출 회원국이 원산지 누적기준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
- ii. **UK 및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와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오징어 및 문어” 로 만든 상품인 경우; 및
- iii. **한국:** 61장 및 62장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된 섬유

상기 (i), (ii), (iii) 의 수출 회원국의 가공.제조 활동이 “불충분 공정” (보존, 분해, 세탁, 다림질, 단순 도장, 외피탈피 등)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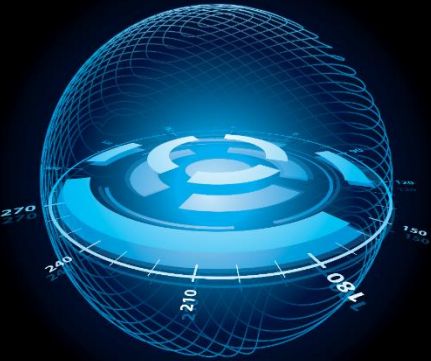
Note: UKV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MOIT의 제 02/2021/TT-BCT 호 시행규칙의 기타 내용은 EVFTA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06월 26일에 발행된 “[EV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뉴스\(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eloitte.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UKVFTA 협정에 따른
제 53/2021/ND-CP 호
시행령 및 제02/2021/TT-
BTC호 시행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

2021년 06월 14일



딜로이트 지원 서비스

딜로이트 베트남의 글로벌 무역 및 관세 전문가는 다음 분야에서의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UKVFTA 원산지
규정 및 기타무역
협정에 따른 자문,
각 자유무역협정
자문

UKVFTA 협정 수행
일정표에 따른
수입/수출 관세율 혜택
및 인센티브 신청
절차자문

UKVFTA에 따른
수출품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 및 원산지
인증을 검토,
필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문 제공

비즈니스 모델,
공급망 관리 및 목표
수출시장에서의 관세
혜택 기회 자문

UKVFTA 원산지
자체증명 또는 EUR.1
증명 취득을 위한 신청
절차 자문 및 신청 업무
지원

UKVFTA 이슈 자문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Kim Min Je
KSG Manager
+84 90 218 5562
mkim21@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park@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Making an impact since 1991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